

임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7나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임금
원 고 (항소인)	◇ ◇ ◇	피 고 (피항소인)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7. 12. 05.	비 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 황00는 2009.2.4.부터 2015.8.31.까지 4년 5개월 동안 □□□기간 제교사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에 의하여 10차례 14호봉으로 계약하였음. - 2011.3.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유·초·중·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퇴직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(일시금 수령자 또는 연금수령 미도래자 포함)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. - 원고는 퇴직공무원이긴 하지만 연금지급자가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호봉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승되어야 하므로 각 호봉발령일에 소급하여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.7월에 학교측에 호봉산정 정정과 소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. - 이에 피고 소속 교육공무원의 법령 적용상의 과실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 급여차액 중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원고에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음.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 가. 피고는 원고에게 68,084,429원 및 그 중 65,575,530원에 대하여는 2015.9.15.부터,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		
판결이유	<p>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(계약의 원칙) 제1항은 “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,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,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다.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,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</p>		

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04.1.27. 선고 2003다14812판결 참고)

⇒ 위 법리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인인 원고와 2009. 2. 4. 무렵부터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들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위 채용계약들은 그 내용대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.

- 나.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중 “을의 호봉은 14호봉이며” 부분과 같은 기회에 그 부분과 같은 취지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동의서와 확인서는 그 작성 당시 27호봉의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채용된 연금 비수급자인 원고의 공무원보수규정(대통령령이다)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효력을 가질 수 없고, 나아가 동일한 기조가 유지된 공무원보수규정 아래에서 그 이후 체결된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 중 이 사건 계약서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호봉에 대한 부분과 그 각 기회에 함께 작성된 이 사건 동의서, 이 사건 확인서도 같은 이유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.
- 다. 이 사건 각 호봉계약이 강행법규이니 공무원보수 규정에 위반되는 이상,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이 사건 각 호봉계약 등의 효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.